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(계약목적)

- ①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정신적·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③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-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(이용료)

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(이용료납부)

- ① 당월 이용료는 당월 말일까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(수협은행) 1010-1851-4804. 예금주 : 울요양원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못할 경우 현금으로 수령 할 수 있으며,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한다.

(본인부담금) ①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등급	1일 급여	월 급여액	본인부담금 (30일기준)	
노인요양시설 (개정법)	1등급	84,240원	2,527,200원	20%	505,440원
				12%	303,260원
				8%	202,170원
	2등급	78,150원	2,344,500원	20%	468,900원
				12%	281,340원
				8%	187,560원
	3등급~5등급	73,800원	2,214,000원	20%	442,800원
				12%	265,680원
				8%	177,120원

(2024.01.01.기준)

- ②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③ 제2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.

(기타 비용부담)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1회 비용	간식비	1일 비용	월 비용	비 고
식재료비	3,000원	무료	9,000원	270,000원	30일 기준
이미용비	무료				
상급침실	무료				

(2024.01.01.기준)

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,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- ① 서비스제공자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의 의무
- 1. 이용자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(단,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 - 2.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3.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 - 4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·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
 - 5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 - 6. 기타 “을”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② 이용자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3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4.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
5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③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3.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·외박에 관한 권리
4.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·조언 및 이용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10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11. 시설의 협약·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④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1.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5.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
6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잡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